

202.41호

행정 명령

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오늘 저 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, 조례의 특정 조항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 또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비상사태 중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 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이후의 명령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이상 행정 명령 202.31에 따라 명령을 지속합니다.

또한, 본인은 본 행정 명령일부터 2020년 7월 13일 월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명령을 일시 중지 또는 개정합니다.

- 행정 명령 202.36에 따라 모든 이발소, 미용실, 문신 또는 피어싱 가게 및 관련 개인 케어 서비스를 대중에게 폐쇄하도록 요구하도록 연장 및 수정된 행정 명령 202.7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개인 케어 서비스업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도록 수정됩니다. 이 지침은 3단계 영업 재개를 위해 발표된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) 지침과 부합되는 지역으로 한정됩니다.
- 각각 공공 또는 사적 사업체 및 공공시설을 폐쇄 또는 제한한 행정 명령 202.3, 202.4, 202.5, 202.6, 202.7, 202.8, 202.10, 202.11, 202.13, 202.14, 202.28, 202.31, 202.34호의 항목을 확장한 행정 명령 202.35호 및 10명을 초과한 모든 크기의 비필수 모임을 연기, 취소, 제한하고 뉴욕 일시 중단(New York On PAUSE)를 구성하는 행정 명령 202.38호는 이로써 향후 행정 명령에 따라 개정 또는 연장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. 그러나,
 - 2020년 6월 12일에 발효되는 비필수 기업 또는 기타 단체의 대면 인력에 대한 감소 및 제한은 보건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적격 지역의 3단계 산업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.
 - 레스토랑/음식 서비스 및
 - 개인 관리.
 - 3단계에 따라 개장한 기업 및 산업 단체는 반드시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해야 합니다.
 - 2020년 6월 12일 금요일부터 3단계 재개에 필요한 공중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핑거 레이크스, 센트럴 뉴욕, 모호크 밸리, 서던 티어, 노스 컨트리. 해당 날짜 이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추가 지역은 추가 수정 없이 본 행정 명령에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3단계 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6월 1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
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
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